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약정금

원 고 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[redacted] 조효동

피 고 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9,000,000원 및 그 중 10,000,000원에 대하여는 [redacted] 부터, 14,500,000원에 대하여는 [redacted] 부터, 14,500,000원에 대하여는 [redacted] 부터 각 [redacted]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판결경정결정

사 건
원 고

약정금

피 고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

조효동

주 문

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[redacted] 약정금 사건에 관하여 [redacted] 선고한
판결의 주문 제1항 중 [redacted] 을 [redacted] 로 경정한다.